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39
----------	-------

발의연월일 : 2026. 7. 20.

발 의 자 : 이주희 · 김선민 · 손 솔
박정현 · 전진숙 · 김 윤
김한규 · 안도걸 · 노종면
조계원 · 모경종 · 전종덕
용혜인 · 남인순 · 김우영
의원 (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집합건물의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집합건물의 다회선계약은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건물관리주체가 취하는 반면 서비스 선택의 제한 등 부담은 점유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집합건물에서는 건물관리주체가 건물 내 통신설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의 독점계약을 주도함으로써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건물관리주체를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리점·판매점 등이 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여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시정조치 및 과징금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나.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0조제3항 신설).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건물관리주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점검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7항 및 제93조제5항 신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한 자 및 점검을 거부·방해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부

과·징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하도록 함(안 제104조제5항제7호의3 신설 및 같은 조 제6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를 “제1항제5호, 제5호의2 및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제5호의3에 따른 건물관리주체는 같은 호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건물관리주체가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관리주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4조제5항에 제7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단

서 중 “제4호의20·제8호”를 “제4호의20·제7호의3·제8호”로 한다.

7의3.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사업자와 같은 조 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금지행위) ① (생 략)	제50조(금지행위) ① (현행과 같 음)
②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 에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u>제1항</u> <u>제5호</u> 및 <u>제5호의2</u> 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 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 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 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 ----- ----- ----- ----- <u>제1항</u> <u>제5호</u> , <u>제5호의2</u> 및 <u>제5호의3</u> -- ----- ----- ----- ----- ----- ----- -----.
<u><신 설></u>	<u>③ 제1항제5호의3에 따른 건물</u> <u>관리주체는 같은 호에 따른 이</u> <u>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u> <u>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전기통</u> <u>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u> <u>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여</u>

③ (생 략)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 ⑥ (생 략) <u><신 설></u>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104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	<u>서는 아니 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건물관리주체가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점검에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관리주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 7의2. (생략)

<신설>

8. ~ 17. (생략)

⑥ 제1항제6호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제4호의2·제4호의8부터 제4호의14까지·제4호의17·제4호의18·제4호의20·제8호·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

-----.

1. ~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
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한 자

8. ~ 17. (현행과 같음)

⑥ -----

-----.

-----제4호의20·제7호의
3·제8호-----

부과·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
부과·징수하며, 같은 항 제4호	-----
의15·제4호의21·제17호에 따	-----
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	-----
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	-----
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
부과·징수한다.	-----.